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제96조”를 “제123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지하철건설본부” 다음에
“청소사업본부”를 삽입하고, 동조동항중 “제
3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
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의회사무처 : 사무처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서
울特別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 따른市稅不均一課稅
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

同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
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熙濬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熙濬委員 趙熙濬委員입니다.

本委員은 議案番號 第925號 檢印契約書制度實
施에 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附則 第1項 施行日을 修正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附則 第2項이 改正 前
規定을 계속 適用해야 하는 內容으로서, 소위
規定을 알고 申告書 날자를 적당히 記載하여
申告하는 경우에는 改正을 하나하나한 內容이라
는 중대한 矛盾點이 있다는 것을 指摘하면서,
이를 명백한 內容으로 修正動議하고자 합니다.

修正하고자 하는 內容은 修正案 附則 第1
項 中 “1994年 1月 1일부터”를 “公布한 날
로부터”로 修正하고, 上程한 附則 第2項 中
“取得하였거나 登記申請을 한 경우에는”을
“이미 取得하여 檢印申請한 契約書에 의한
取得稅와 이미 登記申請한 契約書에 의한 登
錄稅는”으로 修正토록 動議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聲九 趙熙濬委員의 修正動議에 대
해서 再請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12. 서울特別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 따른市稅

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修正動議案(趙熙濬委員 發議)

(14時 10分)

再請이 있으므로 趙熙濬委員의 修正動議는
正式議題로 成立되었습니다.

그러면 趙委員의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議決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서울特別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
에 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修正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한다.

부칙 제1항중 “1994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부칙 제2항중 “취득하였
거나,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을 “이미 취
득하여 검인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세와
이미 등기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등록세”으
로 수정한다.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시세불균일과
세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의
시행에”를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으로 한다.

제2조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② (적용예)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이미 취득
하여 검인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세와
이미 등기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등록세는